

의료원 직제

1973. 2. 26. 제정

2019.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직제는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3.)

제2조(기능)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원 각 기관의 업무 조정 및 운영
2. 의학 및 간호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진료의 조성과 이에 관련된 시설의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타 기관과 의료원 차원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6.)
4.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 의료원의 원무는 「이화여자대학교 직제」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의2 삭제 (2019.1.10.)

제2장 의료원

제4조(의료원장) ① 의료원에 원장을 두되 의무부총장이 겸직한다.

②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의료원장 유고시는 병원장이 연장자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원) ① 의료원 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2.)

② 의료원의 직원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1.4.6., 2019.6.20.)

③ 의료원의 임시직원은 해당 기관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임면한다.

제6조(보직임면)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에 따라 실장·(본)부장 또는 부실장·부(본)부장 등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고, 직원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단, 외부전문가로 보하는 경우는 직원의 경우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0.)

[본조신설 2019.1.10.]

제7조(부속병원) 의료원에 다음의 병원을 둔다. (개정 2019.1.10.)

1.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개정 2019.1.10.)

2.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개정 2019.1.10.)

제7조의2(연구기관) ① 의료원 및 부속병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두며 부속병원 산하 연구원에 연구지원팀을 둘 수 있다.

1. 의료원

가. 이화GHIGW(Global Health Institute for Girls and Women)

나. 이화감염교육·연구센터: 감염교육실, 감염연구실

2.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가. 융합의학연구원: 임상시험센터

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다. 연구대상자보호센터

3.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가. 첨단의학생명연구원: 임상시험센터

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다. 연구대상자보호센터

(개정 2019.5.17.)

② 의료원 소속 연구기관은 의료원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10.13.)

제8조(지원협력기관) ①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자매병원, 연계병원을 정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12.]

제9조(의과대학 및 간호대학과의 관계)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의료원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19., 2016.3.23., 2019.1.10.)

제10조(의료원의 운영·관리) ① 의료원에 원목실, 전략기획본부, 경영관리부, 사회공헌부, 연구진흥단, 국제의료사업단 및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6.2.26., 2019.1.10., 2019.5.17.)

② 의료원에 필요한 센터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4.6., 2019.1.10.)

제11조(원목실) ① 원목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

② 원목실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종교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6.2.26.]

제12조(전략기획본부)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부분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4.6., 2016.2.26., 2019.1.10.)

② 본부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신사업, 기획경영, 경영분석, 예산, 홍보 및 전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부속병원의 관련 소관 업무를 겸하며,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략기획팀, 홍보전략팀, 전산정보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0.3.12., 2016.6.16., 2019.1.10., 2019.12.10.)

③ 전략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6., 2019.1.10.)

1. 부속병원 간의 융합, 협력 및 정책조정
2. 의료원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3. 신규 사업의 전략기획 및 추진 현황 관리
4.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
5. 부속병원 경영분석 및 원가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속병원 업무실적 취합 및 통계 작성
7. 의료원 운영계획의 수립 등 기획 업무
8. 의료원 및 부속병원 예산 편성 검토 및 조정
9. 교원인사 지원 업무
10. 의료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1. 의료원 인력 관리
12. 의료원 직인 관리 (신설 2019.12.10.)

④ 홍보전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3.24., 개정 2019.1.10.)

1. 의료원 원보, 홍보물 등의 편집 및 발행
2. 대내외 의료원 및 병원 홍보 업무
3.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4. 대 언론기관 업무
5. HIP업무
6. 홈페이지 관리
7. 행사 촬영 및 자료 관리
8. 연보편찬
9. 삭제 (2019.5.17.)
10. 삭제 (2019.5.17.)
11. 삭제 (2019.5.17.)
12. 삭제 (2019.5.17.)
13. 삭제 (2019.5.17.)

⑤ 전산정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의료원 전산화 계획 수립 (개정 2019.1.10.)
2.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전산기의 유지 관리
4. 의료 및 경영정보 관리
5. 의료원 시스템의 전산망 운영
6. 기타 전산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9.1.10.)

제13조(경영관리부) ① 경영관리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

② 부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통합 구매, 자산관리, 의공, 인사·노무, 재무회계 및 법무에 관한 중요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팀, 인사노무팀, 법무팀, 의공팀, 재무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단, 관리팀 및 재무팀은 부속서울병원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2019.5.17., 2019.12.10.)

③ 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의료원 제 물품(약품, 의료기구, 일반용품 등)의 통합구매 계획수립
2. 의료원 통합구매 제 물품의 계약 및 구매
3. 각종 공사 및 보수 관련 계약
4.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12.10.)
6. 삭제 (2019.12.10.)
7. 삭제 (2019.12.10.)

④ 인사노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직원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인사·노무 관련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임단협 교섭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노무관리 진단에 관한 사항
5. 노무 관계 대관업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10.)

⑤ 법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0.)

1. 소송 관련 업무
2. 중재기관에 접수된 의료분쟁 업무
3. 원내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4. 의료원 및 병원에 대한 법무행정 지원
5. 의료 관련 법률자문
6. 의료사고 예방대책수립

⑥ 의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17.)

1. 의료기기 점검, 수리 및 안전관리 업무
2. 유지보수 계약 의료기기 관리
3. 각종 기구류 제작
4. 일반물품 수리

⑦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0.)

1. 의료원 통합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금의 전입, 전출 관련 업무
3.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4. 회계장부의 기장 및 관리

5. 특별회계 및 제 연구비 관련 업무
6.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
7. 현금 출납
8. 세무 관련 업무
9. 기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14조(사회공헌부) ① 사회공헌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 ② 사회공헌부에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화로제타홀 의료선교센터 및 사회공헌운영실을 둔다.
- ③ 사회공헌부의 행정실무를 위해 사회공헌운영실에 발전후원팀 및 운영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 ④ 발전후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활동
 2. 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
 3. 의료원 기부금 데이터 관리
 4. 후원자 예우 관리
 5. 후원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⑤ 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0.)
 1.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2. 의료봉사활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지원
 3. 대외 봉사기관과의 협력 활동
 4. 기타 의료원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14조의2(연구진흥단) ① 연구진흥단에 단장을 두고, 부단장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진흥단은 의료원 산하 연구기관의 발전전략 수립, 연구과제 계획, 연구역량 강화 및 활성화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5.17.]

제14조의3(국제의료사업단) ① 국제의료사업단에 단장을 둔다.

- ② 국제의료사업단에 국제의료사업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 ③ 국제의료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
 2.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
 3. 병원 방문 해외환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지원
 4. 해외환자 방문자료 유지 및 관리
 5. 병원 해외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

[본조신설 2019.5.17.]

제15조(감사실) ① 감사실에 실장을 둔다.

- ② 감사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③ 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0.)

1. 의료원 및 부속병원에 대한 연간 자체 감사계획 수립
2. 업무 정기감사
3. 일상감사(입찰 입회, 직무 감찰 등)
4.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도 및 업무개선
6. 감사 결과 사후 관리
7. 비위, 진정, 청원 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기타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감사 활동

[본조신설 2019.1.10.]

제3장 부속병원

제1절 부속목동병원 (개정 2019.1.10.)

제16조(부속목동병원장) ① 부속목동병원에 병원장을 둔다. (개정 2019.1.10.)

② 부속목동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원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병원장 유고시에는 진료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28.)

제17조(부속목동병원의 조직) ① 부속목동병원에 전문진료기관으로 여성암병원을 두고, 의원으로 김포국제공항의원을 둔다. (개정 2013.2.28., 2016.6.16.)

② 부속목동병원에 진료부, 응급진료부, 교육수련부, 안전관리부, 간호부, 사무부를 두고, 국제진료센터 등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9.1.10., 2019.5.17.)

③ 부속목동병원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16.)

제18조(전문진료기관 및 의원) ① 여성암병원에 원장을 두고, 김포국제공항의원에 소장을 둔다. (개정 2019.1.10.)

② 여성암병원장 및 김포국제공항의원소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여성암병원 및 김포국제공항의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여성암병원에 다음의 센터를 둔다. (신설 2016.6.16., 개정 2019.1.10.)

1. 부인종양센터
2. 유방갑상선암센터
3. 재발성부인암센터

제19조 삭제(2019.5.17.)

제20조(진료부) ① 진료부에 부원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6.6.16., 2019.1.10.)

- ② 진료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28.)
 - ③ 진료부에 별표1의 임상진료과를 둔다. (개정 2013.2.28., 2016.6.16., 2019.1.10.)
 - ④ 진료부에 별표2의 센터(실)을 둔다. (개정 2019.1.10.)
 - ⑤ 진료부에 약제팀, 영양팀, 사회사업팀, 보험심사팀, 보건의료정보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방사선종양학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9.1.10.)
 - ⑥ 약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 1. 처방 및 처치용 약품의 조제
 - 2. 의약품의 투약
 - 3.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
 - 4. 약사위원회 관련 업무
 - 5. 기타 약제업무에 관한 사항
 - ⑦ 영양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 1. 식단의 작성, 조리 및 배식에 관한 업무
 - 2. 영양가 분석 및 치료식 관리
 - 3. 급식통계 작성
 - 4. 영양상담 및 교육
 - 5.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
 - ⑧ 사회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 1. 환자의 사회배경 및 가정환경 조사 보고
 - 2. 무의탁환자, 기아 등의 의뢰 알선
 - 3. 자원봉사대 운영
 - 4. 기타 사회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 ⑨ 보험심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 1.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및 청구
 - 2.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및 조정
 - 3. 의료수가 관리
 - 4. 기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⑩ 보건의료정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 1. 의무기록의 대출, 반납 및 보관 관리
 - 2. 환자 진료의 각종 통계 분석
 - 3. 환자명 색인 및 진찰권 등록번호 관리
 - 4. 질병별 및 수술별 분류의 기록 유지
 - 5. 기타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제21조(응급진료부) ① 응급진료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
- ② 응급진료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환자의 관리, 재난대응 체계구축 및 교육 등 응급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10.)
- 제22조(교육수련부) ① 교육수련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6.16.,

2019.1.10.)

② 교육수련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전공의 평가, 전공의 교육 및 관리, 교직원 교육 및 연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2., 2016.6.16., 2019.1.10.)

③ 교육수련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0.)

1. 교직원의 교육 요구도 조사 및 평가 실시
2.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실시, 평가 관련 업무
3. 교직원의 공통 직무교육 계획 및 실시
4. 교직원의 연수 및 학회 참석 관련 업무
5.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병원신입평가 관련 업무
6. 전공의 선발 및 보고, 배치에 관한 업무
7.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 업무
8. 전임의 선발 및 행정 지원업무
9. 의국, 당직실 관련 업무
10. 의학도서관 업무

제23조(안전관리부) ① 안전관리부에 부장을 두고, QPS실 및 CS실을 둔다.

② 안전관리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질 관리, 감염 관리, CS 및 병원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QPS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질 향상(QI)활동 관리 및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교육
2. 환자 안전 관리
3. 각종 지표 관리
4. 진료 및 업무 과정 개선 활동 지원
5. 의료기관 평가 등 외부평가 주관

④ CS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
2. 내부 고객(직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3. CS 교육
4. 고객 관리
5. 기타 병원 CS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24조(간호부) ① 간호부에 부원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6.2.26., 2019.1.10.)

② 간호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간호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28.)

③ 간호부에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특수간호팀, 교육행정간호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0.3.12., 2016.6.16., 2019.1.10.)

④ 병동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2.27., 2016.6.16., 2019.1.10.)

1.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관리 (개정 2019.1.10.)
 2.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 관리 (개정 2019.1.10.)
 3.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개정 2019.1.10.)
 4. 기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 ⑤ 외래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9.2.27., 개정 2016.6.16., 2019.1.10.)
 1. 외래진료부서, 종합검진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 (개정 2019.1.10.)
 2. 외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관리 (개정 2019.1.10.)
 3. 외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개정 2019.1.10.)
 4. 종합 및 일반검진 수검자 관리 (개정 2019.1.10.)
 5. 응급 및 지역병원 이송환자 관리 (개정 2019.1.10.)
 6. 가정간호 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19.1.10.)
 7. 기타 외래진료부서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 ⑥ 특수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9.2.27., 개정 2016.6.16., 2019.1.10.)
 1. 수술실, 회복실 및 중앙공급실 관리 (개정 2019.1.10.)
 2. 수술계획표 작성 및 관리 (개정 2019.1.10.)
 3. 수술실 및 공급실 장비 관리 (개정 2019.1.10.)
 4. 의료소모품 청구, 관리 및 불출 (신설 2019.1.10.)
 5. 수술 및 마취 통계 관리 (신설 2019.1.10.)
 6. 감염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신설 2019.1.10.)
 7. 기타 특수간호팀 간호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0.)
 - ⑦ 교육행정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2.27., 2019.1.10.)
 1. 간호인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간호인력의 인력계획 수립 및 관리
 3. 간호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 (개정 2016.6.16.)
 4. 간호인력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16.6.16.)
 5. 간호인력의 근태 및 평가 관리
 6. 간호분야 관련 위탁 및 수탁교육 관리
 7. 임상간호의 연구계획 수립 및 평가
 8. 간호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공보건의료 임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 (개정 2016.6.16.)
 10. 기타 간호인력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사항
 - ⑧ 삭제 (2019.1.10.)
- 제25조(사무부) ① 사무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6.2.26., 2019.1.10.)
- ② 사무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2.)

③ 사무부에 총무팀, 관리팀, 원무팀, 시설팀, 재무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0.3. 12., 2016.2.26., 2019.1.10., 2019.12.10.)

④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직원 인사 관련 업무
2. 직원 인사고과 관련 업무
3. 교직원 복무(휴가, 출장, 근태 등) 관련 업무
4. 인사기록 관리 및 통계
5. 교직원의 연금, 사회보험, 교직원공제 및 공무상 요양 관련 업무
6. 병원 직인 관리
7. 우편물 관리 및 문서 수발과 통제
8. 보수 책정 예외 사항 관련 업무
9. 통신, 경비, 미화, 조경, 소독, 직물의 세탁 및 재봉 관리 등 업무
10. 제 의식 및 행사 관련 업무
11. 대 관청 허가, 지정, 변경 등 업무
12.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13. 의료 외 직영사업 관리 업무
14. 임대, 용역 및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15. 기타 타 부서 주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6. 삭제 (2019.1.10.)
17. 삭제 (2019.1.10.)
18. 삭제 (2019.1.10.)
19. 삭제 (2019.1.10.)

⑤ 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6., 개정 2019.1.10.)

1. 제 물품의 소요판단, 시장조사 및 수급 계획수립
2. 부속병원의 제 물품(약품, 의료기구, 일반용품 등)의 품목 선정, 계약 및 구매 (개정 2019.1.10.)
3. 고정자산의 유지 및 감가상각 관리 (개정 2019.1.10.)
4. 재물 조사 및 관리 (개정 2019.1.10.)
5. 물품 검수 (개정 2019.1.10.)
6. 부속병원의 재산 관리 (개정 2019.1.10.)
7. 삭제 (2019.12.10.)
8. 삭제 (2019.12.10.)
9. 삭제 (2019.12.10.)
10. 삭제 (2019.12.10.)
11. 삭제 (2019.12.10.)
12. 삭제 (2019.12.10.)
13. 삭제 (2019.12.10.)

14. 삭제 (2019.12.10.)

⑥ 원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24., 2019.1.10.)

1. 입·퇴원 수속
2. 입·퇴원에 관한 증명서 발급
3. 구급차 운영
4. 각종 진료수입 및 환자통계 작성
5. 초·재진 접수 수납 및 진료비 산정
6. 미수금 관리
7. 병원 소송 관련 기초 업무 (신설 2019.1.10.)
8. 기타 원무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⑦ 시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6., 개정 2019.1.10.)

1. 부속병원의 시설공사 및 개·보수의 설계, 시공, 감독 및 준공검사 (개정 2019.1.10.)
2. 각종 시설(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등)의 관리 및 보수
3. 일반 비품의 보수
4. 기타 부속병원 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⑧ 삭제 (2001.4.6.)

⑨ 삭제 (2001.4.6.)

⑩ 삭제 (2019.1.10.)

⑪ 삭제 (2019.1.10.)

⑫ 삭제 (2019.1.10.)

⑬ 삭제 (2019.1.10.)

⑭ 삭제 (2019.1.10.)

⑮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0.)

1.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금의 전입, 전출 관련 업무
3. 회계장부의 기장 및 관리
4. 특별회계 및 제 연구비 관련 업무
5.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
6. 현금 출납
7. 세무 관련 업무
8. 기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센터, 실) 삭제 (2019.1.10.)

제2절 부속서울병원 (신설 2019.1.10.)

제26조(부속서울병원장) ① 부속서울병원에 병원장을 둔다.

② 부속서울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원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③ 병원장 유고시에는 진료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10.]

제27조(부속서울병원의 조직) ① 부속서울병원에 진료부, 교육수련부, 안전관리부, 간호부, 사무부를 두고 국제진료센터 등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5.17.)

② 부속서울병원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0.]

제28조 삭제(2019.5.17.)

제29조(진료부) ① 진료부에 부원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진료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진료부에 별표3의 임상진료과를 둔다.

④ 진료부에 별표4의 센터(실)을 둔다.

⑤ 진료부에 약제팀, 영양팀, 사회사업팀, 보험심사팀, 보건의료정보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방사선종양학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⑥ 약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방 및 처치용 약품의 조제
2. 의약품의 투약
3.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
4. 약사위원회 관련 업무
5. 기타 약제업무에 관한 사항

⑦ 영양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단의 작성, 조리 및 배식에 관한 업무
2. 영양가 분석 및 치료식 관리
3. 급식통계 작성
4. 영양상담 및 교육
5.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

⑧ 사회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사회배경 및 가정환경 조사 보고
2. 무의탁환자, 기아 등의 의뢰 알선
3. 자원봉사대 운영
4. 기타 사회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⑨ 보험심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및 청구
2.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및 조정
3. 의료수가 관리
4. 기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보건의료정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무기록의 대출, 반납 및 보관 관리
2. 환자 진료의 각종 통계 분석
3. 환자명 색인 및 진찰권 등록번호 관리
4. 질병별 및 수술별 분류의 기록 유지
5. 기타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30조(교육수련부) ① 교육수련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수련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전공의 평가, 전공의 교육 및 관리, 교직원 교육 및 연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교육수련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의 교육 요구도 조사 및 평가 실시
2.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실시, 평가 관련 업무
3. 교직원의 공통 직무교육 계획 및 실시
4. 교직원의 연수 및 학회 참석 관련 업무
5. 수련병원실태조사 및 병원신입평가 관련 업무
6. 전공의 선발 및 보고, 배치에 관한 업무
7.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 업무
8. 전임의 선발 및 행정 지원업무
9. 의국, 당직실 관련 업무
10. 의학도서관 업무

[본조신설 2019.1.10.]

제31조(안전관리부) ① 안전관리부에 부장을 두고, QPS실 및 CS실을 둔다.

② 안전관리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질 관리, 감염 관리, CS 및 병원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QPS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질 향상(QI)활동 관리 및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교육
2. 환자 안전 관리
3. 각종 지표 관리
4. 진료 및 업무 과정 개선 활동 지원
5. 의료기관 평가 등 외부평가 주관

④ CS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
2. 내부 고객(직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3. CS 교육
4. 고객 관리
5. 기타 병원 CS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32조(간호부) ① 간호부에 부원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간호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간호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간호부에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특수간호팀, 교육행정간호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④ 병동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관리
2.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 관리
3.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기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⑤ 외래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진료부서, 종합검진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관리
2.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 환자 관리
3.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종합 및 일반검진 수검자 관리
5. 응급 및 지역병원 이송환자 관리
6. 가정간호 계획 수립 및 관리
7. 기타 외래진료부서 및 응급의료센터의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⑥ 특수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술실, 회복실 및 중앙공급실 관리
2. 수술계획표 작성 및 관리
3. 수술실 및 공급실 장비 관리
4. 의료소모품 청구, 관리 및 불출
5. 수술 및 마취 통계 관리
6. 감염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7. 기타 특수간호팀 간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⑦ 교육행정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인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간호인력의 인력계획 수립 및 관리
3. 간호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
4. 간호인력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5. 간호인력의 근태 및 평가 관리
6. 간호분야 관련 위탁 및 수탁교육 관리
7. 임상간호의 연구계획 수립 및 평가
8. 간호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공보건의료 임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
10. 기타 간호인력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33조(사무부) ① 사무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부에 총무팀, 관리팀, 원무팀, 시설팀, 재무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9.12.10.)

④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 관련 업무
2. 직원 인사고과 관련 업무
3. 교직원 복무(휴가, 출장, 근태 등) 관련 업무
4. 인사기록 관리 및 통계
5. 교직원의 연금, 사회보험, 교직원공제 및 공무상 요양 관련 업무
6. 병원 직인 관리
7. 우편물 관리 및 문서 수발과 통제
8. 보수 책정 예외 사항 관련 업무
9. 통신, 경비, 미화, 조경, 소독, 직물의 세탁 및 재봉 관리 등 업무
10. 제 의식 및 행사 관련 업무
11. 대 관청 허가, 지정, 변경 등 업무
12.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13. 의료 외 직영사업 관리 업무
14. 임대, 용역 및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15. 기타 타 부서 주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 물품의 소요판단, 시장조사 및 수급 계획수립
2. 부속병원의 제 물품(약품, 의료기구, 일반용품 등)의 품목 선정, 계약 및 구매
3. 고정자산의 유지 및 감가상각 관리
4. 재물 조사 및 관리
5. 물품 검수
6. 부속병원의 재산 관리
7. 삭제 (2019.12.10.)
8. 삭제 (2019.12.10.)
9. 삭제 (2019.12.10.)
10. 삭제 (2019.12.10.)
11. 삭제 (2019.12.10.)
12. 삭제 (2019.12.10.)
13. 삭제 (2019.12.10.)
14. 삭제 (2019.12.10.)

⑥ 원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퇴원 수속

2. 입·퇴원에 관한 증명서 발급
3. 구급차 운영
4. 각종 진료수입 및 환자통계 작성
5. 초·재진 접수 수납 및 진료비 산정
6. 미수금 관리
7. 병원 소송 관련 기초 업무
8. 기타 원무 업무에 관한 사항

⑦ 시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속병원의 시설공사 및 개·보수의 설계, 시공, 감독 및 준공검사
2. 각종 시설(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등)의 관리 및 보수
3. 일반 비품의 보수
4. 기타 부속병원 시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⑧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0.)

1.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금의 전입, 전출 관련 업무
3. 회계장부의 기장 및 관리
4. 특별회계 및 제 연구비 관련 업무
5.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
6. 현금 출납
7. 세무 관련 업무
8. 기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4장 의료원 운영위원회 (개정 2019.1.10.)

제34조(의료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1.10.) ①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의료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각 부속병원장, 전략기획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장과 총장이 지명·위촉하는 위원 각 2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료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12.19., 2016.3.23., 2019.1.10.)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0.)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료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 등을 연구·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직능) (개정 2019.1.1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원의 장·단기 발전 계획
2. 의료원의 중요 정책 및 방침의 결정
3. 의료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장 보칙

제36조(위임규정) (개정 2019.1.10.)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73. 2. 26. 제정)

이 직제는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9. 개정)

이 직제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7. 개정)

이 직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4. 개정)

이 직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3. 개정)

이 직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6. 개정)

이 직제는 200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3. 개정)

①(시행일) 이 직제는 200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직제의 시행과 동시에 신경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3. 12.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3.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개정)

이 직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9.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9.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3.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0.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7.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0.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0. 개정)

이 직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9.1.10.)

부속목동병원 임상진료과(제20조제3항 관련)

1. 내과(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신장, 혈액종양, 알레르기, 류마티스, 감염)
2. 신경과
3. 정신건강의학과
4. 외과
5. 정형외과
6. 신경외과
7. 흉부외과
8. 성형외과
9. 마취통증의학과
10. 산부인과
11. 소아청소년과
12. 안과
13. 이비인후과
14. 피부과
15. 비뇨의학과
16. 영상의학과
17. 방사선종양학과
18. 병리과
19. 진단검사의학과
20. 재활의학과
21. 가정의학과
22. 핵의학과
23. 직업환경의학과
24. 응급의학과
25. 치과
26. 건진외과

[별표 2] (신설 2019.1.10.)

부속목동병원 진료부 센터(실)(제20조제4항 관련)

1. 심혈관센터
2. 통합암센터
3. 간/췌장담도센터
4. 호흡기센터
5. 신장센터
6. 당뇨센터
7. 건강증진센터
8. 모자센터
9. 뇌졸중센터
10. 로봇수술센터
11. 두경부암·갑상선센터
12. 인공방광/방광암센터
13. 장기이식센터
14. 하지중증외상센터
15. 말초신경수술센터
16. 어깨질환수술센터
17. 부정맥센터
18. 염증성장질환센터
19. 권역응급의료센터
20. 내시경실
21. 인공신장실
22. 수술실
23. 중환자실
24.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25. 호스피스실
26. 재난의료지원센터
27. 파킨슨센터
28. 수면센터
29. 조산예방센터
30. 태아기형치료센터
31. 가임력보존센터
32. 투석혈관통로센터
33.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34. 척추센터
35. 노인의학센터
36. 의학유전학센터
37. 소아심장초음파실
38. 구강악안면초음파센터
39. EPI센터
40. 진료협력센터
41. 감염관리실

[별표 3] (신설 2019.1.10.)

부속서울병원 임상진료과(제29조제3항 관련)

1. 내과(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신장, 혈액종양, 알레르기, 류마티스, 감염)
2. 신경과
3. 정신건강의학과
4. 외과
5. 정형외과
6. 신경외과
7. 흉부외과
8. 성형외과
9. 마취통증의학과
10. 산부인과
11. 소아청소년과
12. 안과
13. 이비인후과
14. 피부과
15. 비뇨의학과
16. 영상의학과
17. 방사선종양학과
18. 병리과
19. 진단검사의학과
20. 재활의학과
21. 가정의학과
22. 핵의학과
23. 직업환경의학과
24. 응급의학과
25. 치과
26. 건진외과

[별표 4] (신설 2019.1.10.)

부속서울병원 진료부 센터(실)(제29조제4항 관련)

1. 심혈관센터
2. 뇌혈관센터
3. 암센터
4. 장기이식센터
5. 건강증진센터
6. 내시경실
7. 인공신장실
8. 수술실
9. 중환자실
10. 응급실
11. 진료협력센터
12. 감염관리실